##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3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라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3586-2호, 2024.06.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3호, 2025. 7. 1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28조 제1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별표]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3조(적용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또는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 로 구분한다.
  -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2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용역비 20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기술인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배점기준)** ①"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 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 ②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적사항 등 세부 실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 한다.
  - ③법무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④법무부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 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⑥자기평가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 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1.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서류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자기평가기술서 (서식)
    - 3.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 내역
- **제6조(평가방법)** ①"수행실적평가"는 [별지1]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실적평가서의 작성은 [별지5]에 따른다.
  - ②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

가항목을 [별지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출한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의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 능력평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 2.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는 그룹 평가등급 배점범위 내에서 각 평가요 소 별로 [별지3] 또는 [별지4]에 따라 평가한다.
- 3. 제1호에 따른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별지6] 또는 [별지7]에 따른다.
-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평가요소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점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회 기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 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제8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 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 우
-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확인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 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이상~10억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 ②"기술인평가"의 경우 [별표]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 2.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③"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 3.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④"기술인평가"및 "제안서평가"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공시한다.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나라장터(www.g2b.go.kr)에 해당용역사업자의 개별점수를 공시한다.
  -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개한다.

③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평가) ①제9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이라 한다.) 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 ④ 제9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 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 ⑤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 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 ⑥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법무부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부표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1. 수행실적평가 중 면접평가
- 2.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사항에 대한 위원 선정은 위원장이 법무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수는 6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은 1/2 이상으로 하되, 상호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건설사 업관리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3호, 2025, 7,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해당분야 경력	15				
	책임건설사업		(11~13)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9				
		면접(발표)	(2 ~ 4)				
			15				
<u>[</u> 가]	H 011H 7111101	해당분야경력	(13~14)				
참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9				
기울건	근닉기골记 	교육훈련	1				
		면접(발표)	(1 ~ 2)				
		해당분야경력	6				
	기술지원기술인	직무분야실적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소	【60점】					
[나]	O CI 스테시크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설계 및 시공단계)	10				
유사용역 및 고사	용역수행실적	유시결식(결계 및   시공단계)	10				
공사 수행실적	<b>【</b> 소	【10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7				
[당]_	벌점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5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an)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15 <b>점】</b>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구시리기	【소	계】	【10점】				
[mL]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마] 교체빈도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빈도	2				
	【소	계】	【5점】				
	[총계]		[100점]				
	공사비절감						
가점	법무시설 조성						
	사회기	· ·					
감점	부패행위						
조1) ( )아이 배저의	으 기숙이평가 또느 기숙제아서	펴가르 시시하기 아느 요여에	대하여 저요하다				

주1) () 안의 배점은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2) 용역비 규모에 따라 면접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 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7 🖽	용역비						
T T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2.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시공단계 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구성조직 의 역량 및 적정성	<ul> <li>참여기술인</li> <li>유사용역수행실적</li> <li>신용도</li> <li>개술개발 및 투자 실적</li> <li>교체빈도</li> <li>가점 및 감점</li> </ul>	70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소계】	【70점】	
[나]		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참여 기술인 과업	- 수행계획(20)	10	-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수행 세부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계획 및	- 발표 및 면접	1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 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 시
방법	【소계】	【30점】	
	【총계】		【100점】

주) [별지2]에 따라 그룹 평가등급 배점 내에서 평가요소별로 평가

# 3.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단계 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구성조직의	- 조직의 역량	40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역량 및 적정성	【소계】	【40점】	
[나]	-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 건설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평가
과업수행	- 시공 전단계의 사업관리	15	-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일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계약관리, 사
세부계획	- 시공 이후단계 의 사업관리	20	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 관리, 사업정보관리 등의 수행방법 적 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 기술활용	5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활용 - 기술자료,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지원체계 효율성등 평가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10	- 책임기술인의 이해도 및 자질의 적정 성 평가
	- 인원투입계획	5	- 조직 구성, 업무 분장의 적정성 -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인원투입 계획 성등 평가
	【소계】	【60점】	
	【총계】		【100점】

주) [별지3]에 따라 그룹 평가등급 배점 내에서 평가요소별로 평가

# [별지1]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시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 1. 분0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병	벜	
가. 참 여 기 술	(1)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 인	60 (25)	0		게 의한							l행규칙」제35조  기준에 부적합
인	(가)해당 분야경력	15 (11 ~ 13)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 공사감리, 설						실사업관리, 유지관	리, <u>감독, 사업관리</u> (단위: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민 13이성			- B미만 I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민 11이상	? 나	9	l미만 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민 9이싱	ļ.	7	미만 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민 7이싱	ļ.	5	미만 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1 ~ 13)		13.5 5 ~ 11	1.5)	(8	12 ~10)	10.5 (6.5 ~8.5)	9 (5~7)
				( )안의 배점은	건설사업	[관리	책임기	술인	면집	접을 평기	<b>하는 경우</b> 어	적용한다.
	(나)직무 분야실적	9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지관리,					
				해당공사규모	-				점수	- (단위:	년)	
				300억원이상	150	상		5미만 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300억원미만	120	상		2미만 )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	)		8.1		7.2	6.3	5.4
	(다)교육 훈련 및 기술자격	1	기 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라)면접 (발표)	(2~4)	정	응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부표)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 성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용역비 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업무수행능력 2점 3점 4점 대접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 기술세인지	15/1(1P)	ୟର	이커는	1 8	<u>-</u> i√I	नाग्प १	ㅋㅎ건너.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포	g 점 7	기 준							
가. 참 여 기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 인	[25]											
술 인	(가)해 당 분야경력	15 (13 ~ 14)	해당공사규모		안전관리, 품질 독, 사업관리, <u>단경력</u>	_공사감리,	설계감리, 안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13 ~ 14)	(11.5 ~12.5)	(10 ~11)	(8.5 ~ 9.5)	(7 ~8)		
	(나)직무 분야실적		<ul><li>※ ( )안의 배점은 설계, 시공, 안전관리 관리, 공사감리, 설계</li></ul>	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김	검사, 건설사임	<b>ქ관리, 유지관</b>	리, 감독, 사업					
								해당공사규모		경	력 (단의	위 : 년)	
				300억원 이상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 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점 수	9	8.1	7.2	6.3	5.4					
	(다)교육 훈련	1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라)면접 (발표)	(1 ~ 2)	용역비 규모에 따라 한 후, 배점한도에 상	• •		. –	•	l 등급을 판정					
			구문 업무수행능력 ※ 면접평가는「건설기 또는 기술제안서된 ※ 면접대상 분야별기 찰공고에 별도 명	명가(TP) 대싱  술인은 건축	-l행규칙」제28. · 이외의 용역 ·분야(1인)로 참	에 대하여 적 참여기간이 <i>기</i>	ト른 기술인평기 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3)기술지 원기술인	[10]																			
기 술 인	(가)해당 분야경력	6		해당공사규모			<u>감독</u>					j, 검사,건설시 설계감리,	*								
				1,000억원0	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민 11이싱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 500억원이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민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 300억원이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	300억원미	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3		점수		6		5.4		4.8		4.2	3.6								
	(나)직무 분야실적		3	3	3	3	3	3	3	3		직무분야	유지				•			;건설시업관리  감리, 안전	·
											-	구분		15이상	l .	5미만 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3		2.4		1.8		1.2	0.6								
	(다)교육 훈련 및 기술자격	1	교· 춘 - - *		Η나 준에 주이성 술사. = 35	해당분야의 따라 적용( 상(0.5점), 1 건축사(0.5 시간 교육원	기: 기술  주이 점), : 을 수	술자격 자격은  상 2주 기사(0.: 료한 지	또는 최상 미민 3점), 나는	는 건축시 상위 1종 난(0.3점) , 산업기 1주일로	법」 <sup>0</sup> 목만 사(0 . 인?	에 의한 건 <sup>*</sup> 인정) .1점) 정	른 건설기술인 축사 자격을 갖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Å	∥ 부 평	가 방	법			
	용역실적 유 사 용 역 수 행 실		합의적 합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가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O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치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단, 설계용역실적 인정한도는 당해 공사규모별로 만점(10점까지로 한다. 예) 해당공사규모가 100억원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기의 설계실적이 300억원인 경우 설계용역의 인정실적은 1 ×0.7×0.7)과 인정한도인 105억원(100억원공사규모의 만점실적중 작은 값인 105억원 적용							
			사업관리용역· o <b>시공단계의</b>	단계를 포함 실적(설계용 <b>건설사업</b> 관	함한 건설사압 역실적 70% <b>난리용역</b>	, 인정) × 1.0		설계단계의 건설		
			: 설계와 시공     업관리용역실?					공단계의 건설사		
			해당 공사규모		건설엔지니	어링 수행실	적 (단위 : 억	원)		
			1,000억 원 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 원 미만 30이상 30미만 20미만						-		
			점수	10	9	8	7	6		
			※ 당해 공사규모	 별 유사용역	 벽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	 만인 경우는 (	 )점으로 처리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7	나 방 법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 제한,업무정 지	[15] 7		감리포함) 을 또는 업무정 1개월마다 (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 <sup>5</sup> 지(과징금 투 D.2점씩 감점 미 건설사업된 관계법령에	· 하여 출 라자서· (1개월 반리(건 따라	티근 1년 분 포함; 미만인  축법·주	년간 관계법학 를 받은 기 경우 1개월 택법상 감리 격정지 또는	나업관리(건축 령에 따라 입 간을 합산하여 일로 계산) 니포함) 업무의 대월 미만인	찰참가제한 4 합산기간 나 관련하여 받은 기간
	(2)벌점	5			벌점을 받음				기술 진흥법 별표8에서 정	
	(3)재정상태 건실도	3	<ul><li>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lt;신용평가등급 기준&gt;</li></ul>						업체가 "신	
				회사채	BBB- 이상		3-미만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 이상		-미만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 이상		3-미만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1)개 발· 활용실적	[10] 3	1)「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 <u>관리용역사업자가</u>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발 및 투 자 실 적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u>용역사업자가</u>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
			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실적금액 20이사 20미만 18미만 16미만 14미만
			(억원)   <sup>20이상</sup>   18이장   16이장   14이장   12이장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 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실 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 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이만 1.25%이만 1.00%이만 0.75%이만 0.50%이상 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 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15%이라 20%이라
	(2)참여 기술인	2	점수 3 2.5 2 1 0 0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인이 제안, 검토하여 발주 청(인.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검토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 받은 참여기술인 -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05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05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법무시설 조성참여 기술인	○ 법무시설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용역(상주기술인 100%, 기술지 원기술인 20%인정)·검사·감독 및 공사관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 시 다음기준에 따라 가점 - 참여경력 10년이상: 0.5점, 5년이상 10년미만: 0.4점, 3년이상 5년미만: 0.3 점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할 경우 상기의 50%, 기술 지원기술인으로 배치할 경우 상기의 30% 적용
	사회 기여도	<ul> <li>○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회 기여도에 따라 가점 부여</li> <li>1) 정부 훈·포장 수상업체 : 0.1점 가점</li> <li>※ 훈·포장 및 수상회수 구분 없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의 수상 여부로 평가한다.</li> <li>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 0.1점 가점</li> <li>3)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0.1점가점</li> <li>4)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 의해확인된 경우) : 0.1점가점</li> <li>※ 2)~4)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관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li> </ul>
		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5)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율이 증가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직전년도 동 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u>비율(%)</u> <u>2%이상</u> <u>3%이상</u>
		<u>가산점수</u> <u>0.05점</u> <u>0.1점</u>
		※ 신규 청년기술인은 만34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
		○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사회기여도에 따라 가점 부여 - 자원봉사 실적 우수자(최근 1년간 28시간 이상 실적): 0.02점 가점 ※ 자원봉사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인증시스템"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로 평 가한다.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 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표]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I. 일반사항

-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다
- 2.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나머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 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의 업무중첩 도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함

- ※ 설계용역의 업무중첩도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 법무부 계약자료로 평가함(단, 건축설계 용역 의 중복참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법무부 계약자료로만 평가한 다.)
- 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입찰공고 시 명시)

- 1)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과 분야별건 설사업관리기술인 5명(건축1, 건축2(안전), 토목, 기계, 통신) 및 기술지 원기술인 1명(건축)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를 달리 정하고자하는 경우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입찰공고시 명시)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입찰공고시 명시)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직무분야: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2)「주택법」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3)「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4)「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 바.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명서 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 2) 군 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확하게 적혀 있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3) 주택공사 근무 경력 중 00지사는 경력인정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 4) 공장 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기계기 술인은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 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5) 담당업무가 2개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조사설계,견적 ②견적,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감독 ⑤설계,견적 ⑥시공,공무 ⑦ 설계,감리
- 6)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 7)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8)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9)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건 : 감리기간 '05.2.1-'05.12.31 등은 평가제 외
- 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 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 참여기술인 면접(발표) 배점기준

	E	배 점(용역비)		
구분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0억원	평 가 요 소
	10 국 년 미 린	20억원미만	이상	
	0.5	0.8	1	공사전반 전문지식 등
책임	0.5	0.8	1	해당 시설에 대한 이해도 등
기술인	0.5	0.7	1	조직의 리더십 등
	0.5	0.7	1	교양, 인품, 인성, 청렴성 등
	0.25	0.4	0.5	공사전반 전문지식 등
분야별	0.25	0.4	0.5	해당 시설에 대한 이해도 등
기술인	0.25	0.4	0.5	조직의 리더십 등
	0.25	0.3	0.5	교양, 인품, 인성, 청렴성 등

<sup>※</sup> 참여기술인 면접(발표) 평가 적용 여부, 면접대상자 등은 입찰 공고시 명시한 다.

###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입찰공고시 명시)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최종 확인된 건설사업관리비]

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 확인된 실적만 인정한다.
- 라. 공고 시 실적 평가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 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1)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개발.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 , 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5.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6.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2)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 7.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율이 증가하는 우수기업 평가
  -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 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인 기업의 청년신규기술 인의 참여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 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 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다.

###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 <del>§</del>	일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b>′</b>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		0	1	1	1	0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9
-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 간 고용인원의 평균
  -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 104/101 = 1.02970297..... = **2.9703%**
-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 산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 $= 1+0+1+1+1+0 = 4\mathbf{g}$
-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율
  - = 4/101 = 0.03960396..... = 3.*9604%*
- \* 적용비율은 2.9703%(신규고용인원 증가율)과 3.9604%(신규청년기술인 고용율) 중 낮은 값이 2.9703% 적용
- 라. 다만,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청년기술인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 0.1점, 2인~3인의 경우 0.05점으로 평가

#### [별지 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면접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5	<u> </u>	 		신청		5	<u> </u>	 	
자수	수	우		샹	가	자수	수	우		샹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 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인의 평가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별지 3]

## 기술인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기술인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그룹 평가등급 배분

등급 업체수	상	중	하	비고
2	2	_	_	
3	2	1	_	
4	2	2	ı	
5	3	2	1	
6	3	3	-	
7	3	3	1	
8	3	3	2	
9	3	3	3	
10	3	4	3	
11	4	4	3	
12	4	4	4	
13	4	5	4	
14	5 5 5	5	4	
15	5	5	5	
16	5	6	5	
17	6	6	5	
18	6	6	6	
19	6	7	6	
20	7	7	6	

☞ 평가대상 업체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찰 공고 시 상.중.하 배분수를 결정

### 2. 기술인평가 그룹별 배점범위

(단위 : 점)

평가대상	상	중	하
10개이하	29이상	29미만 28이상	28미만 27이상
10개초과	28.65이상	28.65미만 27.45이상	27.45미만 26.4이상

### 3. 기술인평가서 평가요소별 적용 가중치

평가등급	수	아		샹	가
가중치	1.00	0.97	0.94	0.91	0.88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 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인의 평가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별지 4]

## 기술제안서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그룹 평가등급 배분

		I		
등급 업체수	상	중	하	비고
2	2	_	ı	
3	2	1	_	
4	2	2	_	
5	3	2	ı	
6	3	3	ı	
7	3	3	1	
8	3	3	2	
9	3	3	3	
10	3	4	3	
11	4	4	3	
12	4	4	4	
13	4	5	4	
14	5	5	4	
15	5	5	5	
16	5	6	5	
17	6	6	5	
18	6	6	6	
19	6	7	6	
20	7	7	6	

<sup>☞</sup> 평가대상 업체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찰 공고 시 상.중.하 배분수를 결정

### 2. 기술제안서 평가 그룹별 배점범위

(단위 : 점)

			<u> </u>
평가대상	상	중	하
10개이하	58.5이상	58.5미만 57이상	57미만 55.5이상
10개초과	58이상	58미만 56이상	56미만 54이상

### 3. 평가요소별 적용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양	가
가중치	1.00	0.975	0.95	0.925	0.9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 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인의 평가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별지 5]

## 수행실적평가서 작성 요령

### 1.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 백상지(80g/m²)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철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부분을 제본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2. 구성 및 제본순서

- 1) 평가서 표지(양식1)
- 2) 용역참여신청서(양식2)
  - 신청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3) 청렴서약서(양식3)
-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4)
- 5) 공동수급협정서
- 6)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포함
- 7) 자기평가서(양식5)
- 8) 용역참여자 동의서(양식6)
- 9)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7)
- 10) 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
- 11)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양식8)
- 12)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
- 13) 교육훈련 이수현황(양식9)
- 14)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10)
- 15)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1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11)
- 17) 벌점 관련 사항(양식12)

- 18) 재정상태 건실도(양식13)
- 19)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양식14)
- 20) 신기술지정증서 및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증명서
- 21)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관련 증명
- 22)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양식15)
- 23) 교체빈도(양식16)
- 24) 가점 및 감점 내용(양식17)
- 25) 자기소개서(양식18)

## 기술인평가서 작성 요령

### 1. 분량

- 1)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 (가)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 20 페이지 이내
  - (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30 페이지 이내
  - (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 2. 구성 및 편집

-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나) 목차
  - (다) 본문
-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에 따라 1~3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장(평가항목):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17~19, 글씨모양: 견명조 진하게, 정렬: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의 적정성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 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 5) 문서 편집
  -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 (다) 줄간격 : 160%
- (라) 글씨색상 : 흑색
-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 6) 표지 작성
  - (가) 평가용 기술인평가서의 표지는 "양식 19"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인평가서의 표지는 "양식 20"를 이용하여 작성
- 7) 제출도서의 목록
  -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나) 기술인평가서
  - (다) 기술인평가서 저장된 CD
  - (라)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 3. 인쇄 및 제본

- 1) 재질
  -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m<sup>2</sup>
  - (나) 본문 : 백상지 80g/m², 양면 인쇄
  -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 2)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4. 기술인평가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 1)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이 본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2)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야 함
    - 3)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기술인평가서 발표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함.
-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 4) 익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실적 수행사례(그림, 사진)는 작성 제외

### 5. 기타 참고사항

-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 1. 분량

- 1)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 (가) 30억원 미만의 용역 : 30 페이지 이내
  - (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40 페이지 이내
  - (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 2. 구성 및 편집

- 1)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나) 목차
  - (다) 본문
-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5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장(평가항목):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17~19, 글씨모양: 견명조 진하게, 정렬: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 5) 문서 편집
  -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 (다) 줄간격 : 160%
- (라) 글씨색상 : 흑색
-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 6) 표지 작성
  - (가) 평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양식 2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양식 22"을 이용하여 작성
- 7) 제출도서의 목록
  - (가)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 (나) 기술제안서
  - (다) 기술제안서 저장된 CD
  - (라)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 3. 인쇄 및 제본

- 1) 재질
  -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m<sup>2</sup>
  - (나) 본문 : 백상지 80g/m², 양면 인쇄
  -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 2)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4. 제안서평가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기술제안서 작성의 기본원칙
    - 1)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이 본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2)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야 함
    - 3) 제출되는 기술제안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발표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함.

-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 4) 익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실적 수행사례(그림, 사진)는 작성 제외

#### 5. 기타 참고사항

-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 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야시	1"
$\circ$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번호	:	
용 역 명	:	

<u> 수요기관 : 법 무 부</u>

접수인

업체명:

대 표 자 :

주 소: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핸드폰: 🕾 )

"양식 2"

#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법무부징	관						
제	목 :	건설사업	관리용역사	업자 사업	수행능력평	¦가서 저	출		
	"건설	사업관리용	( 용 역 역사업자 시		-	대한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	니다
붙임	건설	!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평가시	1부.	끝.		
				20	)				
		<u> 2</u>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9	인)		
		Ž	악성자 :		<b>(2</b> :		FAX	:	)

#### "양식 3"

## <u>청렴 서약서</u>

#### □용역명:

본인은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상주기술인의 이중배치, 기술지원 기술인의 당해용역 포함 10개 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및 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 법무부장관 귀하

# <u>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u>

구 분	업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참여기	시 <del>분율</del>	비	고	
<del>공동</del> 이행											
구분	업체명	주		「H Ŧ Z ト	전	화	분담	내용	비	ק	
T T	ы M 6	Т	<u> </u>	대표자	네프시	ניים	~	업종	비율	-1	<u> </u>
분담이행											
계							10	0%			

# <u>자 기 평 가 서</u>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실적	배점	평 점	비고
			등 급	( )	-	-	저하여 비
			건설사업관리경력	( )	-	-	적합여부
	=110		해당분야 경력	년	15 (11~13)		
	니 색임 사연과	임건설 리기술인	직무분야실적	년	9		
	(성		교육 교육훈련	주	0.5		
		07	자격 기 <u>술</u> 자격		0.5		
			면접 (발표)		(2~4)	0	발주청 평가
			소 계		25		
			해당분야 경력	월	15 (13~14)		
		건 축1 (성 명)	직무분야실적	년	9		
		(성 명)	교육훈련	주	1		
			분야소계				
		<b>ル</b> まり	해당분야 경력	월	15 (13~14)		
		건 축2 (안 전)	직무분야실적	년	9		
		(성 명)		주	1		
	분야별 건설		분야소계				
			해당분야 경력	월	15 (13~14)		
가. 참여기술인		기 계	직무분야실적	년	9		
(60)	사업	(성 명)	교육훈련	주	1		
	관리		분야소계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월	15 (13~14)		
		토뫿	직무분야실적	년	9		
		(성 명)	교육훈련	주	1		
			분야소계				
			해당분야 경력	월	15 (13~14)		
		통 신 (성 명)	직무분야실적	년	9		
		(성 명)	교육훈련	주	1		
			분야소계		4		= = . = .
			! 기술인 면접(발표)	1 4 \ 0474	(1~2)	0	발주청 평가
		소계	(분야소계/평가기술기		25		
	기스기	의기소이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실적	년 년	3		
	기물시 기	원기술인 호	교육 교육훈련		0.5		
	건 (성	축 명)	<sup>교</sup> 퓩   <u>교</u>		0.5		
		•	소계		10		
			계		60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실적	배점	평 점	비고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건설기술 용역실적 (최근 3년간)			억원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건설시 용역	\업관리 사업자	월	7			
다. 신 용 도	uT6/1	참여	기술인	월				
(15)	벌점	누계 핑	명균 벌점		5			
(==),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계			15			
	71141 51 0	개발실적		건				
라. 기술개발	개발.활용 실적	게일.욀용 실적	활 <del>용</del> 실적	건설신기술	건	3		
및 투자실적		2021		건				
(10)	투자실적		개발투자 ! 비율	%	7			
		계			10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	빈도율	%	3			
(5)	참여기술인	교ネ	세회수	상주: 회 기술지원:회	2			
		계			5			
	합	계			100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평 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건,	점
		법무시설 조성참여 기술인	∘ 10년 이상: 0.5점 ∘ 5년이상 10년미만: 0.4점 ∘ 3년이상 5년미만: 0.3점	[책 임]성명 : [분 야 별]성명 : [기술지원]성명 :	, 점 , 점 , 점
) 가 . 감점	가 점	사회기여도	정부 훈.포장 수상업체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여성기업		점
		시청시시고	장애인기업		점
			청년기술인 고용 우수기업		점
			자원봉사 실적 우수자		점
	감 점	부패하기 관련자	부패행위 피해금액		점
		가.감	점계		점

총 평점	

##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주민등록번호	소속회사	자필서명	비고
분 야	등급	성 명	(만 세)	<u> </u>	시크시 o	기 北
책 임 (건축)	000	000	~			
분야별 (건축1)	000	000	~			
분야별 ( <u>건축2_안전</u> )	000	000	~			
분야별 (기계)	000	000	~			
분야별 (토목)	000	000	~			
분 <sup>0</sup> 별 (통신)	000	000	~			
기술지원 (건축)	000	000	~			

<sup>※ &</sup>quot;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 "양식 7"

##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_				자 격	내 용	학	력내용	교육	소속
구	분	분 야	등 급	자격명	취득일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수료 일자	회사
책임건설 관리기 (성									
	건축1 (성명)								
분야별	건축2안 전 (성명)								
건설사업 관리	기계 (성명)								
기술인	토목 (성명)								
	통신 (성명)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성명)								

붙임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증명서 1부.

##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 H	ноч	TE 74	7	명 력 사 항	
구 분	분 야	평점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 (일)
					~ (일)
┃ 책임건설					
사업관리	해당분야				
기 <u>술</u> 인 (성 명)					
:					
: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계	일 =	년 월
기 <u>술</u> 인 (성 명)					~ (일)
:					~ (일)
: 기술지원					
기술인	71 [ H OF				
(성 명)	직무분야				
					~ (일)
			계	일 =	년 월

- \* 경력은 자격 등의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실제 경력 중 주공정과 유사한 실적 수행기 간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기술자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사에서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양식** 9"

## 교육훈련 이수현황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구 분	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고
책임기 <del>술</del> 인	건축				
	건축1				
	건축2 (안전)				
분야별 기 <u>술</u> 인	기계				
	토목				
	통신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이 이수한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실적

구 분	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고

덧붙임 : 교육이수 증명서 (경력확인서 미기재의 경우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발구청	사업명	용역 기간 (A)	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참여기간 (B)	기간 비율 (B/A)	용역비 (백만원)	참여 지분 <u>율</u>	적용 요율	적용 금액	비고
야	완 료 실			~ (개월)	~ (개월)						
사	적		소 계								
용 역 실	진 행 실										
적	적		소 계								
		ā	합 계								
		총	계								

- ※ 1.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 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 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양식 11"

## <u>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u>

#### 1. 업 체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제 재 사 유	비고
	~				
	~				
	~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				
	~				
	~				
	~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 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3. 해당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부실벌점 및 제재현황 첨부

## <u>벌점관련 사항</u>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비고
어케데			
업체명			

분야		성명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비고	
책임기술인	건축				
	건축1				
	건축2 (안전)				
분야별 기 <u>술</u> 인	기계				
	토목				
	통신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 에 따라 평가
  - 2. 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 <u>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u>

1. 회 사	во	
2. 대 표	자	
3. 법인 <del>등록</del> 번	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	번호	
5. 주	소	
6. 신 <del>용</del> 평가 현	후항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역	일	
- 등급유효기	기간	
- 신용평가기	기관	
회 사 채		
- 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처리

#### "양식 14"

## <u>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u>

#### 1. 기술개발.활용 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점 수
				1 × 1/n(n=기술개발자수)
개발	건설신기술	소 계		
실적	Cecle			
		소 계		
				0.5 × 사용실적 가중치
	고 서 니기스	소 계		
	건설신기술			
활용		소 계		
실적				0.3×사용실적 가중기×경과 간가중기
	특허	소 계		
		소 계		
		계		

-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 3. 활용 당시 참여 지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발주청 확인 실적증명서 등)
  - 4. 필요시 별도의 집계표 첨부 가능 (자유롭게 작성)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교통건설신기술협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 2. 투자실적

어케맵	1է	<u>크</u> 차(	년)	2է	<u> </u> 1차(	년)	3 <b>-</b>	크차(	년)	741	шэ
업체명	A	В	A/B @	A	В	A/B (b)	A	В	A/B ©	계	비고
										(@+b+©)/3 ×참여지분율	
										(@+b+©)/3 ×참여지분율	
	계								가+나		

\*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ŕ	- 행 중 인	<u>.</u> 사업현			
분	분 야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del>총용</del> 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총 개월)	잔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개월)	참여 직책	비고
책임 기 <u>술</u> 인	건축								
	건축1								
HOUR	건축2 (안전)								
분야별 기술인	기계								
	토목								
	통신								
기술 지원 기술인	건축								

#### ※ 작성요령

-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 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6"

## <u>교 체 빈 도</u>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 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 2. 참여기술인

분 야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 임 기 <u>술</u> 인									
112 1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 작성요령

-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2. 최근 1년간 참여한 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 첨부서류

- 1. 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2.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 <u>가점 및 감점 내용</u>

####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성 명	용역명	절감 내용	발주청	건 수	점 수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이상						
절감 금액 (비율)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sup>※</sup>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

#### 2. 법무시설 조성참여 기술인

분 야	성 명	본 용역 참여분야	발주청	사업( <del>용</del> 역)명	근무형태	근무기간	원 점수	인정 점수
책임 기 <u>술</u> 인								
분야별 기 <u>술</u> 인								
기술지원 기술인								

<sup>※</sup> 경력증명서(사본) - 법무시설 조성참여 해당부분

### 3. 사회기여도

구	분	해당내용	가산점수
정부 훈.포	장 수상업체		
출소자 .	고용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인기업		
7L01 H 1 L			
│ 자원봉사 │ 실적 우수자			

<sup>\*</sup> 관련 확인서 각 1부(사본)

### 4.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직전년.	도 6개월	간 고용인	원		1) 신규고용인원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①평균	<sup>- ^</sup> 충가율(②/①)
							%
	ō	해당년도	최근 6개	월간 고용	용인원		2)신규 청년기술인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②평균	2)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율(③/①)
							%
ā	해당년도	최근 6개	월간 청년	<u> </u> 기술자	신규 고용	은인원	1) 2)ス ストのフト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③합계	1), 2)중 작은값
							%
			가산점수				

#### 5. 부패행위관련자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업체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고

####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고

<sup>※</sup>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양식 18"

# <u>자 기 소 개 서</u>

###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Ç	일(만	세 )		
주 소									
최 종 학 력	년 학교			학과(졸업, 결	졸업예정, 중퇴	)			
				자	격	사	항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Ы	고

###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7 7 4 7	

<sup>※</sup> 자기소개서 작성시 소속회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상호는 모두 "000"으로 작성 (참여업체 식별 표시가 없도록 주의)

### <u>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u>

- 1. 자기소개서는 참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 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 제출로 간주됩니다.
- 3. "양식18"을 포함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1부)외 사본(7부)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원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은 별도 제출)
-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양식 19" 평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크기 : 가로 40mm, 세로 멋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크기 : 가로 40mm, 세로 멋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 "양식 20" 보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건설사업관리용역 <u>기술인평가서</u>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좋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0, 좋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양식 21" 평가용 기술제안서 표지

(크기 : 가로 40mm, 세로 휫열 10mm, 아랫일 20mm, 박스 확심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크기 : 가로 40mm, 세로 휫열 10mm, 아랫일 20mm, 박스 확심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양식 22" 보관용 기술제안서 표지

<----->

####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전문회사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247 mm)

"양식 23"

## <u>청렴 서약서</u>

#### □용역명: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법무부장관 귀하

### [첨부 1]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BBB-	А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O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ВО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В-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Oleh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I. 건설사	집관리용역 개의	a.							
1)용역명		·			3)발주기	과			
2)공사현장 위치					(발주				
	4-1)공사규모						'		
4)공사개요	4-2)총공사비								
5)건설사업 관리용역	5-1)회 사 명				5-3)대3	표자			
사업자 (대표사)	5-2)등록번호				5-4)전호	화번호			
6)용역기간	20	. ~	20						
	(건설사업관리 <b>'업관리기술인</b>	※ 공사비	비 절감기술(	경우 분담범위 인에 해당되는 기여율(%)에 [	기술인	 의 경우	· 대상(	여부 란에 ○3 을 산정함(절2	王하고, 대 낙기여율의
현황		합은	100%를 초	<u>과할 수 없음)</u>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	간	대살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	 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	털사업관리용역!	의 참여기	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sup>9</sup>	위와 같	이 확인 년	민합니다.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u> </u>			